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법령 전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p>《 제16조: 세금계산서 》</p>	<p>《 제53조: 세금계산서 》</p>
<p>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li> <li>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li> <li>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li> <li>4. 작성연월일</li> <li>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li> </ol> <p>② <u>법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u></p>	<p>① 법 제16조 제1항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급하는 자의 주소</li> <li>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li> <li>2의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li> <li>3. 공급품목</li> <li>4. 단가와 수량</li> <li>5. 공급연월일</li> <li>6. 거래의 종류</li> <li>7. <u>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u></li> </ol> <p>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번호에 같음하여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p>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개정사항 밀줄 처리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p>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p>	<p>③ 사업자는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 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본다.</p>
<p>④ 제2항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전송할 수 있다.</p>	<p>④ 제53조의2 제1항의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p>
<p>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1. 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기재 사항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제2호의 방식에 의한 전송을 제외한다)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p>
<p>⑥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개정사항 밑줄 처리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p>2. 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p> <p>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세금계산서의 교부절차 및 보관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p> <p>《 제53조의 2: 전자세금계산서 》</p> <p>① 법 제16조 제2항에서 “법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법인사업자를 말한다.</p> <p>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p>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개정사항 밀줄 처리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p>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관리설비를 이용하는 방법</p> <p>2.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p> <p>3.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p> <p>4. 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p> <p>③ 법인사업자(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제2항제1호부터 4호까지의 설비 및 시스템에 대하여 「전자거래기본법」 제18조·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아 국세청에 등록하여야 한다.</p>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개정사항 밀줄 처리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p>④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일(제5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자를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을 말한다.</p> <p>⑤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란 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p> <p>⑥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법인사업자 외의 사업자도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전송할 수 있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절차 및 보관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p>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개정사항 밀줄 처리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b>《 제17조: 납부세액 》</b></p> <p>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li> <li>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li> </ol> <p>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b></p> <p>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b>법 제16조에 따라</b>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취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li> <li>1의 2. <b>법 제16조에 따라</b>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3에 따라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li> </ol>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개정사항 밀줄 처리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p>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p> <p>1의 2. <u>제16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u>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u></p>	<p>1의 3. <u>법 제16조에 따라</u>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4에 따른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p> <p>1의4. <u>법 제16조에 따라</u>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p> <p>2. <u>법 제21조에 따른</u>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u>법 제16조에 따라</u>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u>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u>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p>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개정사항 밀줄 처리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p>② <u>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li> <li>2. <u>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u></li> <li>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li> </ol>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개정사항 밀줄 처리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p>4. <u>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교부 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 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u></p> <p>5. <u>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전자 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u></p>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개정사항 밀줄 처리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b>《 제22조: 가산세 》</b></p> <p>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p> <p>1.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p> <p>2.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 신고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p>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개정사항 밀줄 처리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p>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p> <p>1. <u>제16조의</u> 규정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u>다른 경우</u></p> <p>2. <u>제16조 제2항에 따라 전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u></p> <p>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p> <p>1. <u>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u></p>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개정사항 밀줄 처리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p>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p> <p>2의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b>《 제31조: 기장 》</b></p> <p>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에 따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개정사항 밑줄 처리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p>《 제32조의 5: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p> <p>① 사업자가 제16조에 따른 전자 세금계산서를 2011년 12월 31일 까지 교부(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 세금계산서 교부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 제83조: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p> <p>① 법 제32조의5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원을 말한다.</p> <p>② 법 제32조의5제1항 후단에 따른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p>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개정사항 밀줄 처리